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9일부터 구성·운영중인 시장개혁 민관합동 T/F에서 논의되었던 시장개혁과제들 중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단기과제들을 중심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 20일(수)부터 2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개정(안)에는 「지주회사제도 보완, 기업결합심사제도 개선,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손해배상청구제도 개선」 등 4개 시장개혁 관련 과제와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규정 보완, “법위반 사실 공표명령” 정비, 위원 제척사유 강화, 조사권 남용금지 및 조사 연기신청 조항 신설, 분할회사 등에 대한 과징금 징수의 법적근거 신설」 등 5개 기타 법개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공정위는 9월중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주회사제도 보완

부채비율 충족을 위한 유예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및 일부에 대해서만 유예기간이 인정되고 있는 전환유형을 모든 유형으로 확대 ▶ 손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의 처분유예기간을 2년으로 새로이 인정 ▶ 비상장 합작자회사에 대한 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현행 50%에서 30%로 완

화 ▶ 현행법상 허용되고 있는 자회사간 출자 금지 ▶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요건을 비상장 50%, 상장 30%로 신설

2. 기업결합심사제도 개선

현재 사후신고 대상인 대규모회사(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의 주식취득을 기업결합 완료전 신고로 전환(부록 참조) ▶ 심사연장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확대 ▶ 1차 신고 후 추가지분 취득으로 최대출자자가 되는 경우 재신고 의무화 ▶ 피취득 회사의 규모가 소규모(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30억원 이하) 이하일 경우 신고의무 면제 ▶ 계열사간 임원겸임을 신고대상에서 제외

3.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시한 연장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위한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이 '04. 2. 4로 만료 예정이나,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없이는 금융계열사 등 금융기관을 통한 부당내부거래의 효과적 조사가 어려우므로 동 요구권의 시한을 5년간 연장

4. 손해배상청구제도 개선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거치지 않으면 민법상의 손해배상을 제기하지 못하는 것으로 오해되고 있는 재판상주장 제한규정을



삭제, 무과실책임규정을 무과실책임의 추정조항으로 변경 ▶ 관련증거, 변론취지 등을 감안하여 법원이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신설 ▶ 소멸시효 기간을 조정하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에서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범위반 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으로 수정

5.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규정 보완

현재 과징금 상한액이 선진외국에 비하여 매우 낮은 실정으로 과징금 최고한도를 매출액의 5%, 10억에서 10%, 20억으로 인상 ▶ 처벌 감면대상자의 범위에 자발적 조사협조자 추가, 감면대상행위에 형사벌 추가 ▶ 내부지침으로 운영중인 공동행위 제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의 근거규정을 법률에 마련

6. “범위반 사실 공표명령” 위헌소지 부분 정비

헌법재판소의 판결취지에 따라 공정거래법상의 “범위반 사실의 공표”가 포함된

조항을 일괄 수정

7. 위원의 제척사유 강화

피심인에 대하여 법률·경영자문을 하고 있거나 고문으로 있는 경우와 당해 사건에 대해 심사관 역할을 한 경우를 제척사유에 추가

8. 조사권 남용금지 및 조사연기신청 조항 신설

조사권 남용금지 조항 및 조사연기신청 조항 신설

9. 분할회사 등에 대한 과징금 징수의 법적근거 신설

국세기본법을 참고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새로 설립되는 회사 등의 과징금 연대납부책임 규정을 신설

※ 「대규모회사의 주식취득을 통한 기업결합 신고시점 조정」은 본지 '부록(51쪽 이하)' 참조.

※ 「공정거래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는 본지 '부록(53쪽 이하)' 참조.

2003년 지주회사 현황

2003년 7월말 현재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공정위에 신고된 회사는 총 19개사로 지난해 말과 비교시 (주)LGETI 등 3개사가 제외되고, (주)농심홀딩스, (주)풀무원, 대우통신(주), 동원금융지주(주) 4개사가 새롭게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

였다.

금융지주회사는 우리금융지주(주), (주)신한금융지주, 동원금융지주(주), 세종금융지주(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주)LG, SK엔론(주), (주)농심홀딩스, 동원엔터프라이즈(주), 동원금



용지주(주), 상장 또는 코스닥 등록 지주 회사는 (주)LG, 세아홀딩스(주), 한국컴퓨터지주(주), (주)대웅, 우리금융지주(주) 등 9개사이다.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소유하고 있는 지주회사 주식은 일반지주회사의 경우 평균 72.4%,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69.6%이며, 동일인은 일반지주회사의 경우 34.7%,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54.5%로 나타났고, 지주비율*의 경우 일반지주회사는 평균 80.3%, 금융지주회사는 82.4% 수준이다.

19개 지주회사가 지배하는 자회사 수는 총 152개사로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128개사,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는 24개사이며, 자회사에 대한 평균지분율은 일반지주회사의 경우 상장자회사는 39.5%, 비상장자회사는 76.2%이고, 금융지주회사의 경우에는 각각 49.0%, 90.2%이다.

일반지주회사 15개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은 92,598억원, 자회사의 경우 417,531억원, 손자회사의 경우 122,989억원이며, 지주회사그룹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은 633,118억원이다.

지주회사와 그 자회사가 보유하는 비계열사 주식은 총 737개사이며, 이 가운데 20%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수는 31개사이다.

지주회사그룹의 비계열회사 주식소유 현황

구분	계	지분율 분포				
		5%미만	5~10%미만	10~20%미만	20~30%미만	30%이상
일반	283 (229) ¹⁾	149 (120)	50 (46)	63 (48)	13 (11)	8 (4)
금융 ²⁾	454	333	71	40	4	6
계	737 ³⁾	482	121	103	17	14

1) () 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비계열사 현황

2) 금융지주회사의 경우에는 비계열사 주식소유가 없고, 은행 등 자회사가 소유한 현황

3) 신한금융지주그룹(228개사), 우리금융지주그룹(192개사), LG그룹(136개사) 등

한편, 공정거래법상 행위제한요건을 위반하고 있는 사례는 총 6건이 확인되었으며, 이 가운데 4건은 상반기중 이미 조치하였고,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9월중 위원회에 안건상정 예정이다. 행위제한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지만 법에 의해

유예기간이 인정되고 있는 사례는 (주)농심홀딩스(3건) 등 6개 지주회사에서 총 29건이다.

* 지주비율 : 회사의 자산총액 중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중



2003년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분석

2003. 4. 1. 현재 49개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의 전체 채무보증금액은 총 4조 5,420억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3.19% 감소하였고, 공정거래법상 제한대상 채무보증에 있는 기업집단은 10개 기업집단으로 그 금액은 총 6,604억원에 달한다. 이 중 2003년 신규지정 된 4개 기업집단의 채무보증금액은 219억원이다.

2003. 4. 1. 현재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금지의 예외가 인정되는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금액은 3조 8,816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3.29% 감소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으로 산업합리화 관련 제한제외 채무보증에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2002. 4. 1.부터 2003. 3. 31. 기간중 43개 기업집단의 해소대상 채무보증액 1

조 4,634억원 중 해소된 채무보증액은 8,249억원으로 대부분이 여신상환, 신용 전환, 개인입보대체 등의 방법으로 해소되었다.

여신상환이나 신용전환 등에 의한 보증 해소 비율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피보증사의 재무능력 개선으로 여신을 조기에 상환함으로써 부채비율 감축 등 기업건전성이 제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대기업집단들이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채무보증을 해소해 나감에 따라 기업집단 전체의 기업구조조정 촉진 및 기업집단 전체의 공동부실화를 사전에 방지하고, 시스템리스크 완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중요정보고시 이행실태조사 실시

공정거래위원회는 2003. 8. 11~23까지 중요정보고시 이행실태 서면조사 및 대상업종 추가지정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상의 중요정보공개제도는 사업자가 표시·광고를 할 경우에 소비자의 구매선택결정에 중요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광고내용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제도로써, 현행 중요정

보고시에서는 3개 분야 22개 업종에 대하여 중요정보공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공정위는 금년 3월에 이미 1개 분야 13개 업종에 대한 중요정보고시 이행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금번에는 지난 번 조사대상에 포함되었거나 그 동안 업종별 직권조사대상에 포함되었던 업종 등을 제외한 의류업, 가구업, 증권투자업, 투자자문·투자일임업 등 4개 업종을 대상으로



이행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발굴한 부동산 분양업, 사무용기기(프린트·복사기) 제조·판매업과 소비자보호원 등 소비자단체에서 추가지정을 요청해 온 장묘업, 여행업 등을 금번 중요정보고시 이행실태조사와 더불어

어 앞으로 중요정보고시 대상업종으로 추가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업종으로 보고 기초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금번 조사결과 및 그 동안의 중요정보고시 이행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금년 하반기중 현행 중요정보공개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고시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행사 실태 점검

공정거래위원회는 2003. 8. 4~8. 13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85개 금융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계열회사에 대한 주식소유현황과 계열회사의 2002년 및 2003년의 정기·임시주주총회에서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 내용을 서면점검하기로 하였다.

동 점검은 공정거래법 개정(2002. 1. 26)으로 금융보험회사의 계열회사에 대한

의결권행사가 제한적으로 허용된 이후 금융보험회사들의 계열회사에 대한 의결권이 범목적에 부합되게 행사되고 있는지 실태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과 더불어 금년도 공정위 업무계획에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행사 실태 점검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며, 산업·금융 T/F에서 논의과제인 금융보험사의 의결권제한과 관련하여 공정위가 실태 점검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기 때문이다.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들이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감소를 완화하기 위하여 납품·입점업체들에게 거래상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고 있다는 신고 및 제보를 다수 접수하고 대대적인 감시활동에 나섰다.

우선 기접수 된 신고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는 한편, 대형유통업체들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자체예방 하는 것이 보다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주요 유통업체 및 관련 사업자단체 등에 대해 철저한 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현재 조사중인 신고사건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토록 하고, 백화점협회 등 사업자단체와 주요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의 구매 및 마케팅 담당 임직원들에 대해 이달 말 전격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 입점·납품업체들에게 계약 조건에 없는 매장인테리어비용, 광고비 및 입점비 등 각종 비용을 전가시키는 행위

▶ 거래관계에 있는 입점·납품업체들에게 신규로 오픈하는 중소 할인점 및 아울렛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 ▶ 대대적인 상품군을 개편하면서 정당한 기준없이 계약기간중에 있는 납품업체들의 거래를 중단시키는 행위 ▶ 입점업체들로 하여금 자체할인행사를 하도록 강요하고 정상 매출시 적용하는 수수료율을 공제하는 행위 ▶ 입점·납품업체들로 하여금 상품의 매매가 없는 가상매출을 발생시키도록 강요하고 정상매출 수수료율을 공제하는 행위 ▶ 입점·납품업체에게 판매사원의 파견을 강요하는 행위 등이다.

공정위는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교육실시 후에도 이와 같은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직권조사 등을 실시하여 위법행위가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의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무인경비 표준약관 승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측할 수 없는 각종 범죄와 사고에 대비하여 스스로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개인방범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무인경비서비스 시장이 기존의 기업보안 위주로부터 소규모의 상점, 사무실, 주거공간의 보안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무인경비 기기의 잦은 하자 및 오작동, 실제 피해발생시 소극적인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권 행사의 제한, 과도한 위약금의 부과 등 불공정의 소지가 있는 약관조항과 관련한 소비자의 불만이 계속해서 제기됨에 따라 무인경비서비스 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의 권리의무 관계를 보다 명확하고 균형 있게 규정한 약관이 통용되어 불공정한 약관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2003. 8. 13. 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가 심사청구 한 무인경비 표준약관을 승인하였다.

무인경비 표준약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계약서(약관)에 기재할 중요사항을 예시하고 설명의무 이행방법을 권고하였고 ▶ 계약자동연장 요건 및 효과를 명백하게 규정하였으며 ▶ 계약해제·해지시 기기철거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경우 이용자가 직접 철거할 수 있도록 하고 ▶ 사업자가 이용자의 해제·해지의사를 표시한 날·기간만료일로부터 7일내에 보증금

을 반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용자에게 위약금을 지급토록 하였다.

또한 서비스 제공 정지가 가능한 경우를 구체화(천재지변, 회사의 파업, 이용자의 파산 등)하고 이러한 사유발생 즉시 이용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이용자의 피해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고 ▶ 사업자는 설치기기의 점검·보수·정비의무를 부담하고, 이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기기의 멸실·훼손·고장이 있는 경우 이용자는 사업자에 대해 무상으로 수리, 부품교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동종의 고장이 반복되는 경우 계약해제도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 약정한 경비개시일로부터 계약종료일 까지 경비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발생시 이용자의 과실을 상계한 통상의 손해액을 배상토록 하였다.

그리고 계약이 해제·해지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사업자 및 이용자가 부담할 위약금을 잔여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년치 월이용료 총합의 10%, 잔여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잔여 계약기간 월이용료 총합의 10%로 합리적으로 정하였다.

※ 「무인경비 표준약관」 전문은 본지 '부록(69쪽 이하)' 참조



2003. 7월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 현황

공정위는 2003년 6월중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가 변동됨에 따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 21조제3항에 의거하여 2003년 7월 1일자로 변동내용을 당해 회사와 동일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로 새로 편입된 회사는 출자총액 제한, 채무보증제한 등 각종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를 받게 된다.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도로공사」 등 2

개 기업집단이 부채비율 100%미만으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서 지정제외 (2003. 6. 11)됨에 따라 2003년 6월중 15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2003. 6. 2. 361개에서 2003. 7. 1. 현재 345개로 16개사가 감소하였으며,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계열회사 수는 2003. 6. 2. 현재 831개에서 2003. 6월중 8개가 신규편입되고, 5개가 계열제외 되어 2003. 7. 1. 현재 834개로 3개사가 증가하였다.

[2003. 7월중 계열사 변동 개요]

기업집단	2003. 7. 1	편 입			제 외						증감	2003. 8. 1.
		회사 설립	주식취득 및 기타	계	합병	매각	청산	친족 분리	기타	계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15개)	345	1	2	3	-	-	-	-	-	-	3	348
상호출자·채무보증 제한기업집단(49개)*	834	6	3	9	-	1	3	-	1	5	4	838

* 15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을 포함



[2003. 7월중 계열사 변동 내용]

◆ 편입 : 9개사(회사설립 : 6, 주식취득 : 3)

◆ 제외 : 5개사(지분매각 : 1, 청산종결 : 3, 기타 : 1)

기업집단	편 입			제 외		
	회사명	영위업종	사 유	회사명	영위업종	사 유
엘 지	현대 석유화학(주)	석유화학 및 기초 유기화학물 제조업	주식취득	-	-	-
현 대	동해해운(주)	해운중개업	"	-	-	-
금 호	금호타이어(주)	타이어 제조판매	회사설립	-	-	-
롯데	현대 석유화학(주)	석유화학 및 기초 유기화학물 제조업	주식취득	-	-	-
현대 산업개발	(주)아이앤이	건축토목공사	회사설립	-	-	-
하이트 맥 주	천주물류(주)	화물자동차 운송업	"	-	-	-
대 성	대성글로벌 네트워크(주)	텔레마케팅	"	-	-	-
농 심	(주)농심홀딩스	지주회사	"	-	-	-
코오롱	덕평랜드(주)	고속도로휴게소 주유소 운영업	"	(주)리치엔 페이머스	경영상담업	청산종결
효 성	-	-	-	(주)브릿지 솔루션그룹	컴퓨터시스템설계 및 자문업	지분매각
하나로 통신	-	-	-	(주)한국케이블 미디어센터	디지털프로그램 및 콘텐츠제공업	기타 ¹⁾
현 대 백화점	-	-	-	(주)에이치몰	온라인정보제공 서비스업	청산종결
				(주)에이아이 리더스	소프트웨어자문 개발 공급업	청산종결

※ 출자총액 · 상호출자 ·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 「엘지」, 「현대」, 「금호」

주1) 지분감소로 지배적 영향력 감소

공정위 인사

발령

2003. 7. 30.

공정거래위원회 근무를 명함.

행정사무관 고행석(제도개선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파견근무를 명함.

(파견기간 : 2003. 7. 30~2004. 7. 29)

정책국 제도개선과 근무를 명함.

행정사무관 차준영

2003. 8. 12.

기획관리관실 행정법무담당관실 근무를 명함.

행정사무관 안병훈

공정거래위원회 근무를 명함.

행정사무관 이정구(행정법무담당관실)

2003. 8. 14.

기획예산처 근무를 명함.

행정사무관 이종훈(특수거래보호과)

2003. 8. 19.

복직을 명함.

소비자보호국 특수거래보호과 근무를 명함.

행정사무관 노상섭